

#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415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11. 15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제명이 변경됨(2023. 9. 27. 공포 및 시행)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준용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부터 제1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기관: 조례 소관부서와 합의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: 생략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(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)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
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
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
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인용조문  
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
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

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

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 
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 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  
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의 개정)  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  
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의 개  
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 
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
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 1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 (재정 및 운영 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3조 (재정 및 운영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--.</p>

### 2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재정 및 운영 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(재정 및 운영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--.</p>

3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.

4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	제7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----- -----.

5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회계관리 등) ① ~ ③ (생략) ④ 기금, 보조금,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	제14조(회계관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



관리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 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---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6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	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」--.

7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」--.

8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준용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	제10조(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	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」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9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	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 -----.

10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·② (생략)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 -----.

11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	제14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----- ----- -----.

12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	제7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----- -----

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 
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**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인용조문 정비를  
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 
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해당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 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비용발생요인 없음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박민지
연 락 처	2627 - 1110

# 관계 법령

##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- 차.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### 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- 가. 못·늪지·보(澗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- 사. 공유림 관리

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- 다. 중소기업의 육성
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- 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  - 가. 지역개발사업
 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  - 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 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  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  - 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  - 사. 자연보호활동
    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    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    -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  - 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    -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  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  - 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    - 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  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    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  - 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  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 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 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 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- 7. 국제교류 및 협력
  - 가. 국제기구·행사·대회의 유치·지원
  - 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